

『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안)』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

2012. 1. 18.

광운대학교
법과대학
권현영



Contents

I 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II 공공기관의 역할

III 교통연구원의 대응방안



I 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

1. 추진 배경 (1)

- 스마트폰의 보급·확산,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공공정보 활용 수요 증가



(출처 : 방통위)

- 스마트폰, 태블릿PC, 게임기, 스마트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의 출현과 무선인터넷 활용의 증대로 말미암아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이 향후 인터넷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사안이 되었음

1. 추진 배경 (2)

공공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

- 공공기관은 사회, 경제, 지리, 기상, 관광, 비즈니스,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정보를 수집, 생산, 관리 하고 있음
- 공공정보는 공무상의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·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내재
- 국가정보화가 추진되면서 민간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 국가자산인 공공정보의 종류와 양은 지속 증가
(※ 794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 총 1,461종)
-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수요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, 정책적 기반 마련 요구도 지속 증대

1. 추진 배경 (3)

- 공공정보 이용형태의 다변화 및 기능성의 확대,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수요가 높은 공공DB의 민간제공 기반조성 필요



- 활용도 높은 공공DB의 효과적인 제공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시급

2. 주요내용(1)

기본원칙

- **공공 DB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용권 명시**

- ※ 공공기관의 제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,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를 법적으로 보장

- **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 의무부여 - 이용권의 구체적 실현 보장**

- ※ 국민 누구나 공공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의무 부여

- **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이용 유도**

- ※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 우선,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등 권리남용 금지

2. 주요내용(2)

공공DB책임관

- 각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공DB제공책임관을 두도록 함
 - ※ 공공기관의 DB제공 책임자로 민간에서의 이용편의를 위한 창구 역할
 - ※ 각 기관의 공공DB에 관한 관리·제공·이용 관련 업무 총괄

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



- 공공DB 제공 신청 접수 및 처리
- 공공DB 목록정보서비스 및 소재 안내
- 공공정보 저작권 자문 및 권리처리 지원 서비스

- 공공DB통합제공시스템 보급·운영지원
- 심의·조정위원회 운영지원
- 공공DB 관리·제공·이용 관련 실태조사·분석

2. 주요내용(3)

제공대상DB

- **공공기관에서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**
 - 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제외
 - ※ 「저작권법」 등 기타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외
- **이미 (web 등으로)공개된 공공DB에 관하여 접근 및 이용 제한 금지**
 - ※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용방식 개발 보장, 창의성 도모

2. 주요내용(4)

제공대상DB등록및확정

- **공공기관의 DB 등록 의무 부여**

- ※ 이용가능성 보장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DB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함

- **행정안전부 - 등록된 내용을 공공DB목록으로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**

- ※ 등록 해태 등 누락 방지를 위해 조사권한을 둠

- **제공대상 DB의 확정**

- ※ 모든 공공DB 가운데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DB를 확정

- **누구나 알기 쉽도록 이용요건이나 해당 DB의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제공대상 공공 DB목록을 공표**

2. 주요내용(5)

공공DB통합제공시스템



- **이용자의 접근성 제고**

- ※ 온라인 one-stop 서비스 실현

- **이용권의 실질적 보장**

- ※ 시스템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 및 공공 DB를 직접 연계하여 구체적인 이용계획 및 서비스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(6)

제공절차의 간소화

- **공공DB제공대상 목록에 의한 이용요건에 따라 제공신청**

- ※ 소관 공공기관 및 활용지원센터 양방향으로 신청 가능 - 소재 안내 등 편의성 제고
- ※ 신청인의 이용목적 및 서비스계획, 이용조건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여부 결정
- ※ 법률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제공 거부 가능

- **공공 DB 통합제공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에서 제공까지 온라인화 가능**

- **제공방법 및 절차의 통지**

- ※ 공공DB의 제공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, 이용협약 등 필요한 절차를 통지하고 즉시 이행

2. 주요내용(7)

제공중단

- **이용중인 공공DB의 이용배제 근거 마련**

- ※ 공적 역무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보완적 수단
- ※ 이용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제공중단 근거 마련
- ※ 전체 국민생활의 편의보장이라는 균형적인 관점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

심의·조정위원회

- **공공DB 제공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심의·조정위원회를 통한 불복절차를 마련, 국민들의 공공DB 이용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**
- ※ 기본적인 행정심판, 행정소송 또한 중첩적으로 보장하여 국민권익 보호

2. 주요내용(8)

비용부담

- **이용자에게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부담**
 - ※ 이용권을 저해하는 목적이 아니라, 실비 등 필수적인 소요부분으로 이해
 - ※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

책임면제

- **공공 DB 제공 및 이용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담당 실무자들 부담 해소**
 - ※ 공공DB 제공에 관하여 고의·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이상 정보의 품질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

3. 추진상황

입법진행상황

● 국회 김을동 의원 등 13인 공동발의

- ※ 『공공데이터베이스제공및이용에관한법률(안)』 2011.9.5 의안번호 1813128
- ※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

● 향후 진행상황 예상

- ※ FTA,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상황에 따라 작년 통과는 불가능하였음을 2월 임시국회시 통과 예상
- ※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는 경우 특별한 유예상황이 없는 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예정
- ※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령 구체화(시행령, 시행규칙) 연구 추진 중

II 공공기관의 역할



의무사항(1)

공공DB 제공

● 공공기관의 DB 제공 원칙

- ※ 특별한 이유(공공DB의 공익적 목적 훼손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)가 없는 한 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DB를 제공해야 함
- ※ DB의 제공 및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 - 민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가공이나, 권리처리 등
- ※ 교통연구원은 법안에 따를 때 공공기관에 해당(총리실산하) - **교통·도로 관련 다양한 학술정보(DB) 등 보유 기관**으로서 중대한 역할기대 - 다양한 정보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

공공DB 등록

● 공공기관의 보유·작성 DB의 의무 등록

- ※ 누구나 활용가능 한 공공DB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DB 목록의 작성, 관리
 -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(공공DB 등록 관리시스템)
- ※ DB이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사항을 종합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
 - DB 명, DB 이용방법, 관련 기술사항 등

의무사항(2)

권리처리 등

● 저작권 및 권리관계 파악 및 권리처리 필요

- ※ 개인정보 등 제공 불가 내용이 담긴 공공DB의 경우 활용성을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조치
- ※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 등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제공이 불가하므로 공공DB 작성 단계에서 사전에 권리처리를 통해 처분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

책임관 지정

● 각 기관의 정책수행 책임자 지정

- ※ 책임관을 임명함으로써,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관리·제공·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실무추진체계가 마련되고, 전담창구로서 민간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
- ※ 교통정보통합활용지원센터 등과 같은 전문적 역량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의무사항(3)

제공 결정

- **제공신청에 따른 제공 여부 판단**

- ※ 제공신청을 받은 개별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나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
- ※ 공공기관은 제공 신청 양식에 따른 이용계획이나, 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제공을 하여야 함(법률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제공거부 불가)

제공 이후 관리

- **정당한 공공DB이용을 위한 사후관리**

- ※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그 이용을 중단 시켜 전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필요

Ⅲ 교통연구원의 대응방안



공공DB 개방에 대비

● 법률(안) 통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 필요

- ※ 대내용(업무용) 데이터베이스 보유 및 작성의 관점에서 민간이용 가능성의 범주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
- ※ 내부계획에서는 연구원 DB의 개방대비 ① 조직 및 인력 확보, ② 품질관리(cf, 표준적 기술적용, 최신성 유지...)체계 고민, ③ 정보보호 대책 등 무결성, 가용성, 신뢰성 유지 방안 고민 ④ DB 내용의 선별(초상권, 저작권 등 권리정보 선별)

● 조직 및 인력 확보

- ※ 공공DB법 통과에 대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(제도), 기술 인력 확보 및 조직 구성하여 미리 대비하여야 함
- ※ 대응조직과 인력은 기존 도로공사 각 부서 DB의 통합/표준화된 관리를 도모하면서, 개방에 대비한 최신성과 신뢰성 유지업무를 담당
 - 물론 DB 관련 저작권, 초상권, 위치정보, CCTV 등 관련 법적문제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사후대응 조치도 함께 진행하여야 함

공공DB 개방에 대비

● 품질관리

- ※ 현 연구원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DB의 형태 및 내용에 관한 세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
- ※ 보유 DB에 대한 인덱싱 후에 각종 적용기술 등을 표준화하고,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중장기 관점의 품질관리 도모, 공공DB법 발효에 대비한 단기대응 가능

● 정보보호 대책 고민

- ※ 연구원의 DB가 실시간으로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될 경우를 상정, 정보오류 및 제3자의 위변조-공격이 있을 경우 정책부담이 가중될 우려
- ※ 정보의 최신성, 신뢰성,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미연에 마련해 두어야 함

공공DB 개방에 대비

● 공공 DB 정보내용관리

※ 연구원의 DB 개방시 법적 문제발생 가능한 정보내용 예시

- 제3자 저작권 문제: 보유DB에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?
- 개인정보: 개인정보/ CCTV 활용 정보 / 초상권 / 인격권 등?
- 위치정보?
- 군부대 위치 등 군사기밀/비밀 정보?

● 기타 공공 DB의 유료개방 문제?

- ※ 현행법에서 유료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기상관련 정보, 특허정보, 공간정보 등 극소수의 정보에 한정(법적근거가 명확)
- ※ 법률수준의 명확한 근거없이 유료로 연구원의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은 추후 법적문제 소지 가능성 / 담당자 징계 및 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※ 공공DB법에서는 무료제공원칙 / 다만, 제공실비 가능 / 징수금원은 제공정책에 재할용

타 기관 동향

● 서울시의 경우 (공공 DB법에 따른 제공기반 마련중)

- ※ 서울시는 공공DB법의 통과를 전제로 이미 상당수준의 자체적 정책준비를 완료
 -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(data.seoul.go.kr) 을 구축하여 베타테스팅 중
 - 동 사이트를 통해 각종 서울시 DB를 OpenAPI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
 -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 및 지원센터 등 조직체계 정비 중

● 기상청, 통계청, 국토부 등의 경우 (기존 소관법률에 따른 제공중)

- ※ 기상청의 기상정보에 관하여는 이미 기상산업진흥법에 정보제공절차 규정
 - 기상청장에 등록된 기상사업자에 한하여 기상정보 제공
 - 일부 기상정보는 유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
- ※ 통계청의 통계정보에 관하여는 이미 통계법에 정보제공절차 규정
 - 특정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누구나 정보신청
 - 통계기관장은 자료의 사용목적, 내용 및 범위 타당성을 심사하여 제공
- ※ 국토해양부의 공간정보의 경우 이미 공간정보산업법에 정보제공절차 규정
 - 국토부장관에게 등록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공간정보 제공
 - 공간정보는 유, 무료로 제공되며,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당해 정보를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음

감사합니다

